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76

발의연월일 : 2021. 11. 29.

발 의 자 : 홍성국 · 강선우 · 김경만

김성주 · 김정호 · 남인순

박성준・윤재갑・이병훈

전용기 · 정일영 · 최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2월 30일 시행예정인 전부개정법률은 법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 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대한 사항과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의무 및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의 통지에 관 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 체가 조사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

조의2 및 제8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및 신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5조의3(조사결과 심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심사관은 조사가 종료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제2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심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및 신고인에게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사관의 지정, 심사보고서 제출, 심의 절차 개시 및 통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및 조사결과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 85조의2 및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전부개정법률 | 전부개정법률 |
| <u><신 설></u> | 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 |
| |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
| |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 |
| | 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 |
| | 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및 신고 |
| | 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바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
| |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
| |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
| |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
| |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
| | 조사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불 |
| |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 설> | 제85조의3(조사결과 심사 등) ① |
|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에 |
| | 대한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을 |
| | 지정하여야 한다. |
| | ② 심사관은 조사가 종료되면 |
| | |
| |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 |
| | 의결을 담당하는 전원회의 또 |

- 는 소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제2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 출하면 지체 없이 심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및 신고인에게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통지하여야 한다.
- 5 그 밖에 심사관의 지정, 심 사보고서 제출, 심의 절차 개시 및 통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